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00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이종배 · 서천호 · 김기웅
엄태영 · 성일중 · 김미애
김성원 · 김희정 · 김용태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5제2항 중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을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8조의6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8제4호 중 “방해하거나 기피한”을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방해하거나 기피한”을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u>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⑦ (생략)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 . <단서 삭제></u>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훈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 -----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5.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부 · <u>방해하거나 기피한</u> 자	-- <u>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u> <u>으로 진술한</u>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